

01 지방세 개념

개 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탄력세율제도)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관계법입니다.